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성평등가족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12월 15일, 김한규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12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32회국회(임시회)

-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2026. 2. 5.)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33회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17.)

-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2026. 3. 24.)

-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김한규)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정착 중인 다문화가족을 현장에서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이 옥 순)

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위원
추가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1항제1호¹⁾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3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략)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1)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 의장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현행법 제3조의4²⁾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³⁾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7명 이내)으로 구성됨.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2026년 1월 현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⁴⁾의 위원은 위원장과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7명 등 총 20명임⁵⁾.

4.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3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3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각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그 밖에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5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4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
② 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4제3항제2호에 따라 7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책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이 된다.
- 4) 제8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2025년 2월 14일 ~ 2027년 2월 13일)
5) 참고자료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요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국무총리)이 위촉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임.

유사 입법례를 보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 남북관계 발전위원회⁶⁾,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⁷⁾,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관리위원회⁸⁾ 등의 경우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①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10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 7)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
 3.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4.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현재 성평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등 주요 지원사업들의 경우 성평등가족부에서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각 시·도와 시·군·구를 통하여 사업수요의 파악 및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등 지원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지방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족 지원 추진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다문화가족 정책 수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민간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정책의 수립·심의과정에 지역사회의 의견 반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임.

성평등가족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적응 지원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서비스 욕구·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개정안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 상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제2항·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수사기관의 협조) (생략) <u><신설></u>	제9조의2(수사기관의 협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 상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③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절차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u><신설></u>	

개정안은 현재 피해자가 상담소 등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반복하는 고충이 있으므로 상담소의 장 등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사실 등 사건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담소의 장 등이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사건정보를 직접 경찰로부터 받게 될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경험 등을 반복하여 진술함

으로써 받을 수 있는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줄일 수 있고, 상담자가 상담 전에 사건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상담을 보다 원활히 진행하고 피해자에게 더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봄.

여성가족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 필요성은 인정하되, 경찰청의 의견을 수용하고 긴급상담이 주요 업무인 1366센터는 경찰에 사건정보를 사실상 요청하기 어렵고 실익도 적어 사건정보 요청기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정 수용하는 입장임.

경찰청은 개정안에 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는 정보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⁹⁾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¹⁰⁾에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입법례¹¹⁾를 참조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 9)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형사사법업무”란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형사사법정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 10)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
- 1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3(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는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발생지 등에 대한 관련 정보 및 자료로서 필요최소한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형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장 : 김한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라는 문구를 추가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의결

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 안 자 : 성평등가족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시·도지사 협의체가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4제3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의4(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략)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한 20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가 되며,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2. (생략) <u><신설></u>	제3조의4(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 ----- ----- ----- ----- ----- ----- ----- ----- 1.·2. (현행과 같 음) 3.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 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 는 사람	제3조의4(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의 설치)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 ----- ----- ----- ----- ----- ----- ----- 1.·2. (개정안과 같 음) 3. <u>다문화가족정책</u> <u>에 관하여 학식</u> <u>과 경험이 풍부</u> <u>한 사람으로서</u> <u>「지방자치법」-</u> ----- ----- ----- -----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④ · ⑤ (개정안과 같음)
------------	----------------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략)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u>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u>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